

속표지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시 : 2016년 8월 23일(화) 14:00~17: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일정표

시 간	내 용
13:30 ~ 14:00	■ 등 록
14:00 ~ 14:20	■ 개회식 - 개회사 : 노 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 환영사 : 표창원 (국회의원) - 축 사 : 심두보 (한국소통학회 회장)
14:20 ~ 17:00	■ 학술세미나

사회 : 이 상 철 (성균관대 학부대학 교수)

14:20 ~ 14:45 (25분)	■ 발표 1 : 류 정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팀장) 학대위기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14:45 ~ 15:10 (25분)	■ 발표 2 : 정 의 철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뉴스프레이밍 분석: 방송뉴스를 중심으로
15:10 ~ 15:35 (25분)	■ 발표 3 : 이 창 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바람직한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
15:35 ~ 15:50	휴 식

사회 : 허 경 호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5:50 ~ 17:00 (70분)	■ 종합토론 : “바람직한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방향” - 토론 1 : 이용욱 (경찰청 여성계장 경정) - 토론 2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 토론 3 : 신수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지원팀 변호사) - 토론 4 :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토론 5 : 유상건 (상명대 문화기술대학원 스포츠정보기술융합학과 교수)
------------------------	---

*

목 차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워크숍

발 표 문

1. 학대위기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1
류 정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팀장)	
2.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뉴스프레이밍 분석: 방송뉴스를 중심으로	23
정 의 철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3. 바람직한 아동학대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37
이 창 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문

1. 경찰의 아동학대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51
이 용 욱 (경찰청 여성계장 경정)	
2. ‘흥미’ 대상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 보도	57
윤 여 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3. 아동학대범죄보도에 대한 제언	65
신 수 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지원팀 변호사)	
4. 한국 언론은 아동학대 보도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73
이 완 수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5.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9
유 상 건 (상명대 문화기술대학원 스포츠정보기술융합학과 교수)	

- ● ● ●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워크숍

발표 1

학대위기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류 정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팀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세미나
2016년 8월 23일(화)

학대위기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류 정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주요내용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I. 학대위기의 아동: 현황과 실태
- II. 학대위기아동 보호, 왜 중요한가?
- III. 학대위기 아동의 사회적 보호: 현황과 문제점
- IV. 아동보호체계에 개입권의 쟁점과 과제

1. 학대위기의 아동: 현황과 실태

KI 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 학대위기아동 현황

KI 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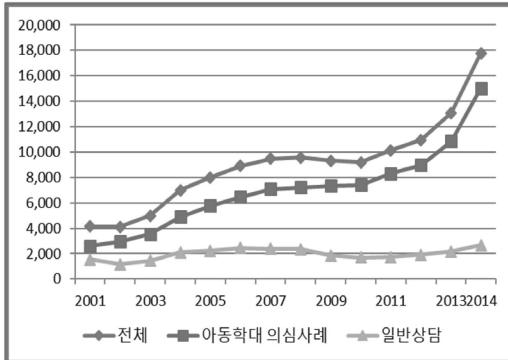
㉠ 2016년 아동학대 사망사고일지

시기	지역	사례 내용
'15.12	인천	11세 초등생, 친부 등의 감금, 폭행 등 피해 가스배관 타고 탈출
'16.1	부천	친부모가 아동 살해('12년, 당시 만10세) 후 시신훼손, 냉동보관
'16.1	화성	친모가 침열대는 아동(7개월)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
'16.1	인천	친모 등이 아동(만5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상습 폭행하여 화상
'16.1	홍성	친모가 우는 아동(9개월)에게 장난감을 던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
'16.1	울산	친부가 아동(만1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칼로 찔러 전치3주 상해
'16.2	부천	친부 등이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후(만13세) 미라 상태로 11개월 방치
'16.2	고성	친모 등이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후(당시 만7세) 아산에 암매장
'16.3	부천	친부 등이 아동(3개월)을 떨어뜨린 후 10시간 이상 방치, 사망
'16.3	평택	친부 등이 아동(만6세)을 3개월간 화장실에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하여 숨지게 한 후 아산에 암매장
'16.3	화성	계부 밀침으로 창틀에 머리를 부딪힌 아동, 뇌수술 후 뇌경색으로 사망
'16.3	철곡	부모가 음식을 몰래 꺼내먹는다며 아동 4명 손발을 묶는 등 상습학대
'16.3	김포	이모가 조카(만3세)의 배를 걸어서 복부손상으로 사망
'16.3	청주	친모가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후(당시 만4세) 아산에 암매장
'16.3	부산	친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4개월)을 질식사시키고 본인도 자살
'16.8	인천	친모가 4살 아동을 몽둥이와 철제 옷걸이로 폭행, 온종일 굶겨 사망
'16. 8	의정부	초등학생 의붓딸(10세)을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탈북자 남성
'16. 8	나주	3살 조카를 학대 살해한 우울증 및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엄마는 취업을 위해 타지로 떠남)

1. 학대위기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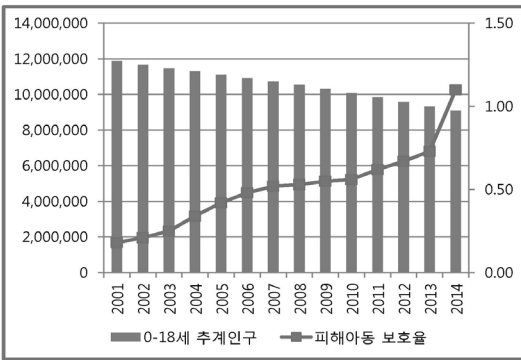
KI 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아동학대 신고접수 의심사례 (2001-2014)



자료: 보건복지부, 2014 전국 아동학대현황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2001-2014)



자료: 보건복지부, 2014 전국 아동학대현황

* 피해아동 보호율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보호율

아동천명당 피해아동 발견율

한국	미국	호주
1.1 (2014)	9.1 (2013)	17.6 (2013)

자료: 통계청, www.index.go.kr/portal/main/EachDtlPsgDetail.do?idx_cd=1422

1. 학대위기아동 현황

KI 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신고조사를 기반으로 한 체계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고 조치판정을 받은 아동의 수만이 학대피해아동으로 집계됨



1. 학대위기아동 현황



㉞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

-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함.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아동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규정되고 있음.

1. 학대위기아동 현황



㉞ 아동학대에 대한 보편적(universal)정의의 어려움

- 아동에 대한 양육방식과 보호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의 고유한 가치, 태도, 의식 등을 이루는 사회문화적 조직(sociocultural fabric of the society)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 훈육 VS 학대
 -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
- ✓ 의도성-의도성의 검증 어려움
- ✓ 적절성-적절한 보호 및 양육의 적정기준성의 모호함
- ✓ 결과의 인과성-아동의 건강, 안전, 발달에 미친 위해의 정도 판정이 어려움

1. 학대위기아동 현황



② 아동학대의 유형

유형	정의
신체학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 신체 가해 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 행위 등이 포함됨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포함함
성학대	아동 대상의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방임	물리적 방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
	교육적 방임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의료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
	정서적 방임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

1. 학대위기아동 현황



아동학대 사례유형 (중복학대 별도분류)

유형	건수 (비율)
신체학대	1453(14.5)
정서학대	1582(15.8)
성학대	308(3.1)
방임	1870(18.6)
중복학대	4814(48.1)
계	10,027(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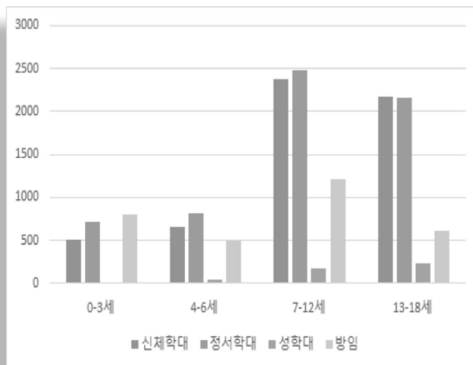
- 중복학대를 미분류 하면, 정서학대가 6,176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와 방임이 각각 5,699건(36.9%), 3,136건(20.3%), 성학대 447건(2.9%)으로 조사됨.

1. 학대위기아동 현황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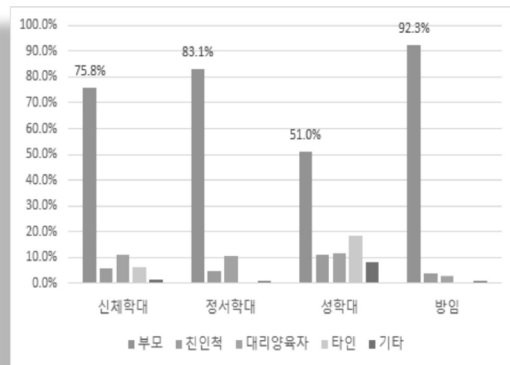
㉠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별 사례유형

- 영유아, 학령기 이전, 학령기 등 피해아동 연령별로 학대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함.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학대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



1. 학대위기아동 현황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학대행위자 특성

- 학대행위자 특성은 신체·정신적 장애, 장애의심,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중독 및 질환문제 등 총 20개 유형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해당 되는 경우 중복적으로 응답했음.
- 학대행위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3.5%)이었으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나 고립경험 (20.2%)과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10.1%)의 순으로 나타났음.
- 부모가 자녀 양육 방법과 지식이 부족할 경우 학대 관련 인식의 결여로 이어져 자녀를 학대 또는 방임하기 쉬우며, 이와 관련한 부모교육이 필요함.

1. 학대위기아동 현황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② 고소 고발 건수

- 방임이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지속관찰에서는 가장 높게, 성학대가 고소 고발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음.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지속관찰	4234	74.3%	4643	75.2%	113	25.3%	2469	78.7%	11459
고소고발사건처리	949	16.7%	866	14.0%	285	63.8%	311	9.9%	2411
아동과의 분리	290	5.1%	351	5.7%	10	2.2%	138	4.4%	789
만나지 못함	226	4.0%	316	5.1%	39	8.7%	218	7.0%	799
	5699	100.0%	6176	100.0%	447	100.0%	3136	100.0%	15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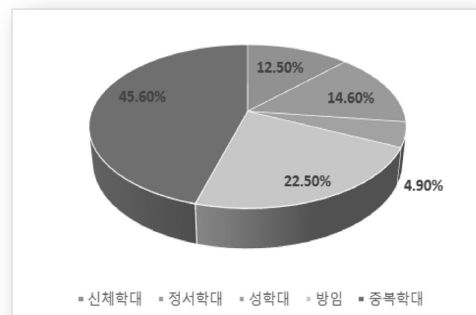
1. 학대위기아동 현황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② 재학대율

학대피해아동들이 재학대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

- 1) 현행 아동보호체계가 학대피해사례에 대해 충분한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 학대에 대한 개입은 피해아동의 가족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원의 지원을 필요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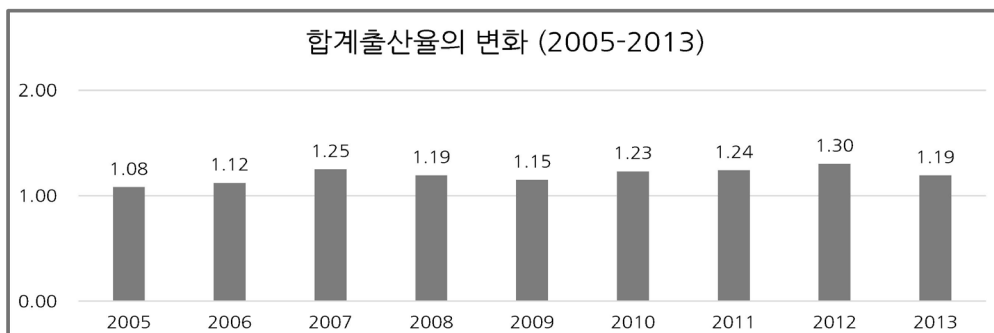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복학대 별도분류)

II. 학대위기아동 보호, 왜 중요한가?

II. 학대아동보호, 왜 중요한가?

③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io)의 지속적 감소 추세

- 적정 인구대체수준 2.1이하에서 변동
-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9로 2005년 1.08보다 약간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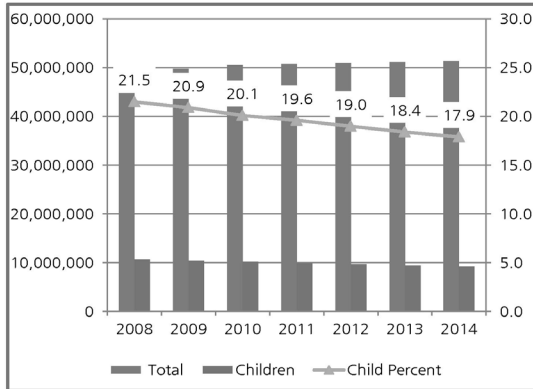


11. 학대아동보호, 왜 중요한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아동인구의 지속적 감소

- 2014년 총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7.9%로 2008년 21.8%보다 3.6%감소



㉡ 아동인구 감소 영향

- 중단기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감소에 따른 보육, 교육 부문, 고용, 주거, 국방, 산업 등의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
- 장기적으로는 미래 생산가능 인구부족으로 노인부양의 부담 증가, 궁극적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 생산가능인구 1백 명 당 부양인구 37.3명 (2010년) → 77명 (2040년)으로 증가

11. 학대아동보호, 왜 중요한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아동학대의 개인적 사회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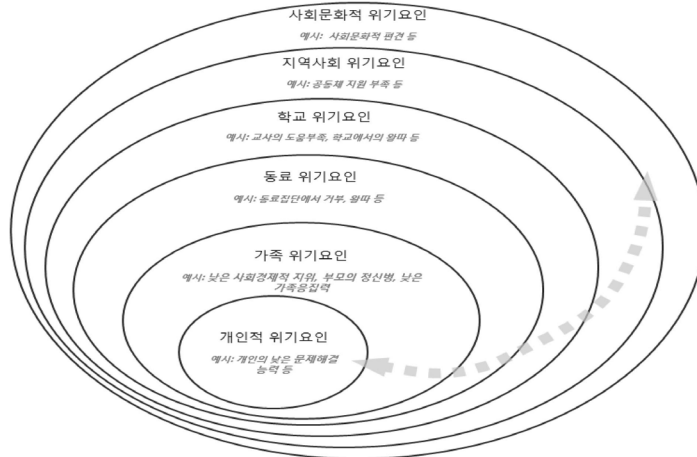
- 발달위기(developmental risk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전체의 책임
-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인 해악과 중장기적 사회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위기개입에서 종료까지 일관된 책임소재 불분명
- 아동학대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추계(김수정, 정익중, 2016)
 - 추계는 신고된 아동학대 피해자수(0.11%)와 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실태조사'에 근거한 수(학대로 의심되는 아동비율25%)를 각각 최소치와 최대치로 상정해 추계

	아동학대현황보고서('14)	아동학대실태조사('11)
직접비용	885억원	8조원
간접비용	3014억원	68조원

11. 학대아동보호, 왜 중요한가?

②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 부모, 가족이 처해있는 경제·사회·물리적 환경조건의 개선이 필요함.



1V. 아동보호체계의 개편의 쟁점과 과제

② 학대위기의 요인은 아동발달의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위기로 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발달단계 위험특성	영유아기					초등학교 재학 연령기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개인적 요인 Micro-level Risk Factors					가족관계적 / 가정환경적 요인 Meso-level Risk Factors					가족 외적/환경적 요인 Macro-level Risk Factors						
상황적 위기 Situational Risk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 (아동 vs 가족원)					우발적 가족갈등 (불화, 가정폭력)					대인양육 부적응, 학교부적응, 비행 가출, 학교폭력, 왕따, 학업중단, 도래의 일탈·비행, 자살 등						
지속적 위기 Enduring Risk	아동 기질적·병리적 요인(문제행동, 공격성, 충동장애, 질병·질환), 양육자 병리적 요인(신체적·정신적 질환), 악물/알코올 중독					부적절한 양육태도, 의사소통 단절 부모·자녀문제, 가족갈등(만성 가정폭력, 이혼), 방임 등 아동학대					사회적 고립 양육가치관 반사회적 행동 수용적 법제도						
근원적 위기 Underlying Risk	주양육자의 불우한 아동기 가정폭력					빈곤, 경제적 결핍 낮은 사회경제적 지원					지역사회 범죄율, 취약한 사회관계망 열악한 아동·가족 지원체계						

관심취약 아동
Children in Needs/Vulnerable

우선보호대상 아동
Looked-After Children

III. 학대위기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현황과 문제점

KI 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II. 학대위기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현황

KI 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학대위기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생,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재공론화되고 있음
- 아동학대 관련 쟁점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 아동의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할에 관한 논의 본격화되어야 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 2013년 울산, 칠곡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법정부 아동학대 종합대책> 추진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행됨
 - ✓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 ✓ 학대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과정에 경찰 및 사법기관 개입-아동보호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마련, 학대 행위자에게 치료 및 교육 등을 강제

III. 학대위기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현황

㉞ 아동학대처벌법 이후의 변화

- 2015년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 및 시행
 - ✓ 아동학대관련범죄 정의 추가-살인죄 추가됨
 - ✓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포함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강화

㉞ 다시, 2016년 3월 29일 「아동학대 방지 대책」 발표

-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실천적 대안 제시 미흡
 - ✓ 학대피해아동 및 요보호 아동의 발굴과 처벌강화가 주된 내용
 - ✓ 가해부모의 부모교육 및 인식개선
 - ✓ 2016년 하반기에 우선 긴급한 현장대응조직 및 인력확충
- 예산 및 인력 인프라 확보의 불투명성
 - ✓ 관련예산 긴급증액, 규모 미확정
 -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총원 예정

III. 학대위기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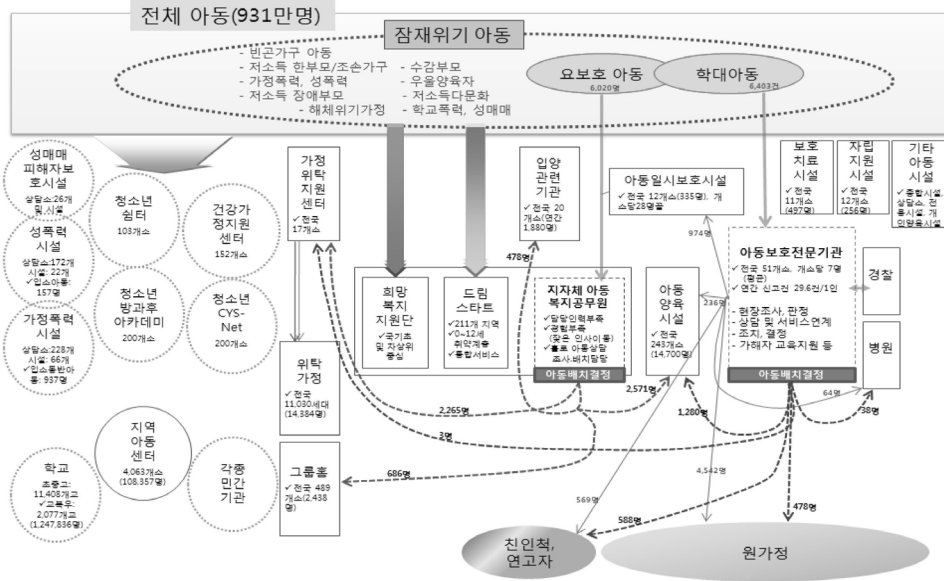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추진도〉



III. 학대위기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현황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공급체계의 난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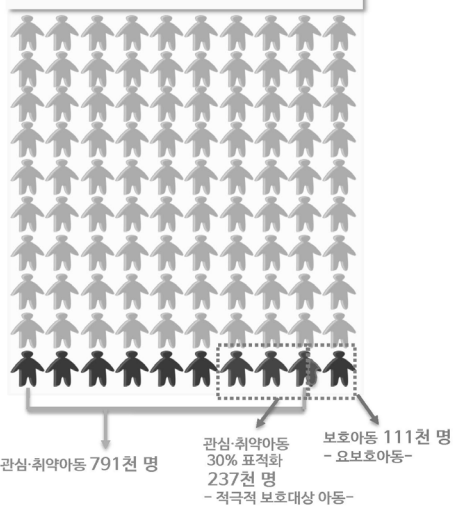
III. 학대위기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현황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문제점1. 제한적 보호의 대상

- 현행 보호체계는 제한적, 소극적으로 정책 대상을 표적화(targeting)하고 있어 보호서비스 효과성의 한계를 노정
- 발달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위기도 심화 이전 초기 개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사후 대처 중심의 현행 체계의 한계를 극복 어려움
- 발달 위기 유형 및 위기도 수준, 보호체계를 통한 개입 조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 가족이 경험하는 발달 위기의 다차원적 특성을 정책 대상으로 고려

전체 아동인구(18세 미만) 9,316,736명



III. 학대위기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현황



- 현재,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15천 명, 일시보호 및 공동생활 가정아동 25백여 명, 입양아동 1천여 명, 가정위탁 11천여 명, 아동학대 판정아동 68백여 명 등을 모두 고려해도 5만여 명 이하로 전체 아동인구의 0.4% 수준
- 우선보호대상 111천여 명, 관심·취약아동 791천여 명의 30% 수준인 237천여 명을 정책대상으로 고려할 경우 그 규모는 348천여 명으로 현재 보호대상 아동 규모의 약 8배 수준으로 확장

위기아동 유형	규모	구분	현행 Gateway
시설보호 아동	15,916	시설 보호 대상	양육시설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
그룹홈 거주 아동	2,438		그룹홈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133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 피해 보호시설 아동	197		상담소, 경찰서,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쉼터 아동	640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경찰서, 청소년 CYS-Net, 쉼터
소년범(강력범 제외)	68,236	재가 보호 대상	경찰서, 소년법원, 소년보호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가정위탁 아동	14,584		가정위탁지원센터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
학대피해 아동	6,774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신고 112
국내입양 아동	922		입양기관* 읍면동 및 시군구청 보고
소년소녀가정 아동	796		읍면동 및 시군구청
요보호 아동	6,926		아동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읍면동 및 시군구청 (사후)보고
우선 보호대상 아동	117,562명		(전체 아동대비 1.26%)
학교폭력 피해아동	62,000		학교, 경찰서, 병원, 112, 신고 상담센터, Wee 센터,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이혼가정 아동	100,312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일부), 사회복지관 등
빈곤아동	304,672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저소득 한부모·조손가구 아동	324,20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관심·취약 아동	791,184명		(전체 아동대비 8.49%)
전체 요보호 아동	908,746명		(전체 아동대비 9.75%)

III. 학대위기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현황



㉠ 문제점 2. 보호의 대상의 분리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및 가족지원 체계와 분절적 운영
 - 청소년 보호체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쉼터, 성폭력·성매매 관련 지원기관, 청소년 한부모 지원기관 등이 운영됨
 - 가족지원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상담시설, 한부모 지원 기관 등으로 구성
- 가족지원체계 내에서 아동발달과 위기환경에 대한 개입은 가장 기본적인 접근 원칙
- 청소년보호체계와 아동보호체계 간의 부처간, 서비스 영역간 칸막이가 존재하여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양산 및 생애주기와 연동하는 보호 체계의 연속성 단절

III. 학대위기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현황



㉠ 문제점 3.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1)

↔ 아동보호의 공공성 부재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등 대안양육체계는 각기 분리된 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닌 아동보호서비스를 민간기관에서 전담
 - ✓ 현장조사 시 요구되는 공권력 부재, 학대행위자의 서비스 거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신변안전 위협 등의 문제
 - ✓ 2014년 기준, 전국 5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 개소당 최대 11개 시군구를 관할, 상담원 1인당 연간 325명을 보호
 -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사후적응 서비스를 위한 연계 제한적

III. 학대위기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현황



㉠ 문제점 3.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 (2)

➡ 아동보호의 공공성 부재

- 대안양육시설(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모두 민간 위탁운영, 국가개입 부재에 따른 책임성 논란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절차 전개, 입양 이후 사후관리의 제한성
 - ✓ 주요 관련 주체인 청소년보호체계 및 미혼모 지원체계 등과의 연계·협력 취약
 - 생활시설 중심의 대안양육시설은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지방자치단체 아동생활시설 중심으로 운영
 - ✓ 지자체에서 시설입소 아동에 대한 배치, 사후관리 미흡: 시설부적응 등에 따른 아동 재배치 시 아동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일관된 배치기준 부재

III. 학대위기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현황



㉔ 문제점 4.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3)

➡ 아동보호의 전문성 부재

- 지방자치단체의 학대위기 아동 보호기능의 한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아동복지공무원 ↔ 일시보호시설 ↔ 대안양육 체계의 3자 중심으로 작동
 - ✓ 지역내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 ✓ 아동 배치결정 및 보호조치가 표준화된 서비스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매뉴얼 부재
 - ✓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보호결정은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보호조치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전무한 실정
- 일시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보호 아동 발생 직후 대안양육 체계로 즉각 유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시설 편입 이후 보호체계 내 생활적응이나 배치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위기아동의 원가정에 대한 지지·복원서비스가 취약하고, 원가정 분리 이후 대안 양육 체계로의 편입에 우선하여 서비스 지원

III. 학대위기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 현황



㉔ 문제점 5.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4)

➡ 지역중심의 공공-민간 연계 부족

- 드림스타트 중심의 취약 아동가족 사례관리
 - 드림스타트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 희망복지지원단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 ✓ 지역사회 자원부족 및 연계·협의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통합서비스 제공의 한계
 - ✓ 지역에 따라서는 사례관리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사례관리 업무의 과중한 부담 (예: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1인당 평균 90여 명의 아동을 사례관리)
 - ✓ 보호대상 아동연령을 12세까지로 제한, 전체 연령대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라 보호서비스의 지속성 및 발달상태 모니터링 불가

Ⅳ. 학대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KI 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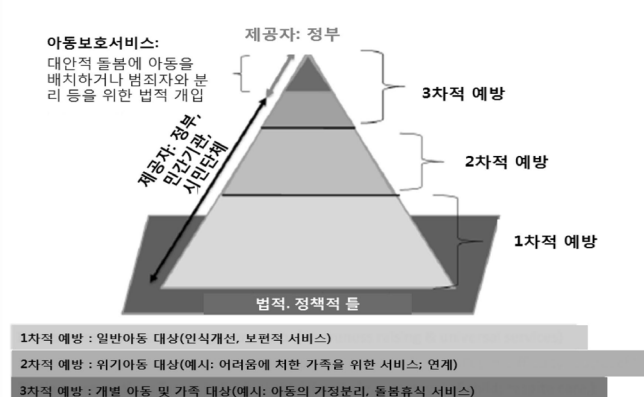
Ⅳ. 학대위기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KI 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② 1. 보호대상의 확대 및 대상의 욕구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

- 아동보호체계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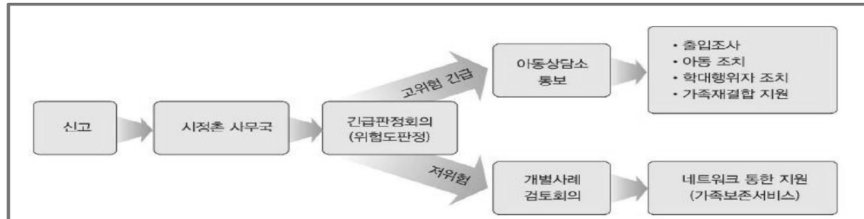
✓ 아동보호대상의 확대를 통한 조기개입과 예방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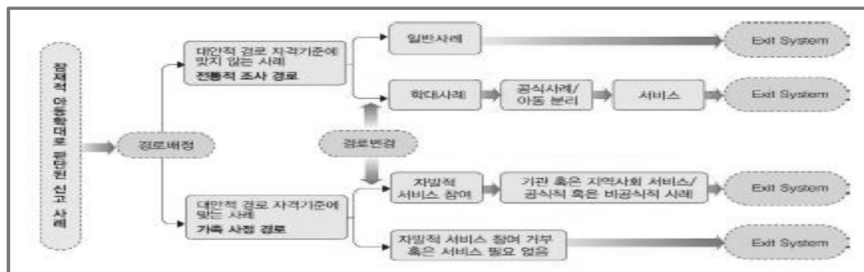
Ⅳ. 학대위기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 위기수준에 따른 차등적 대응 system

〈일본의 아동보호체계: 신고 이후 사례 흐름도〉



〈미국의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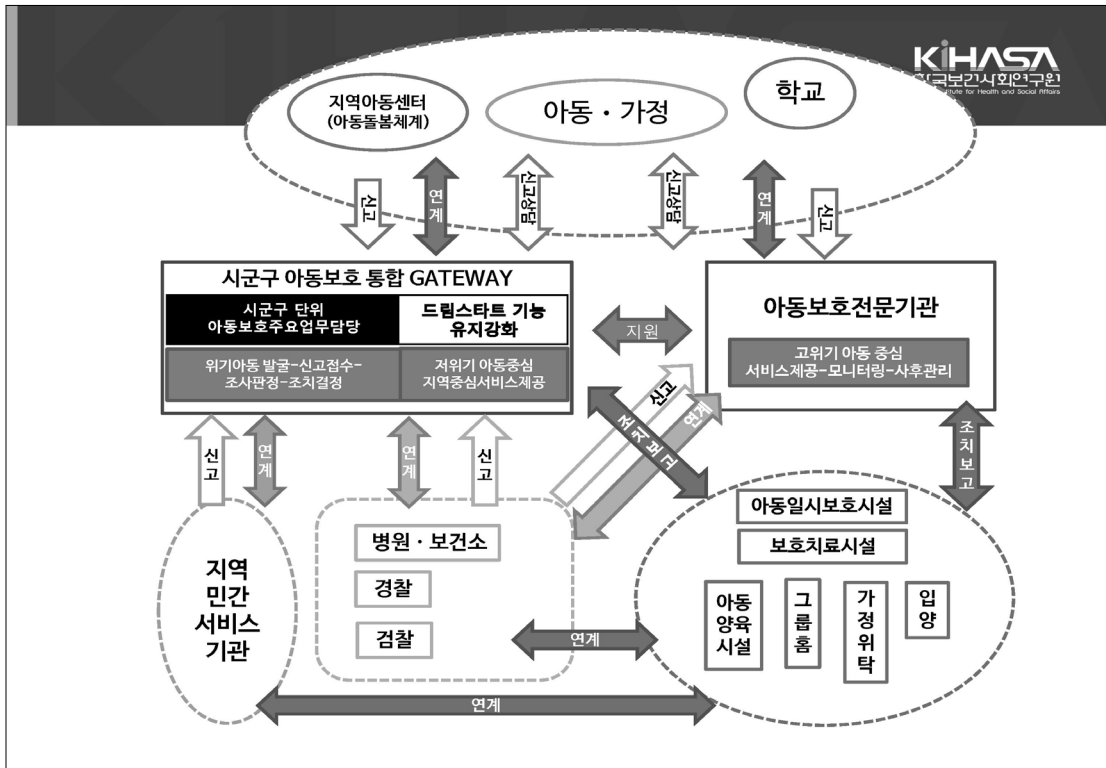


Ⅳ. 학대위기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 2. 위기아동 보호체계의 국가 책무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지역단위 아동보호서비스 기획·조정의 컨트롤타워 기능 정립

● 학대피해와 요보호 아동으로 구분되어 있던 학대위기아동의 신고접수경로를 아동보호 통합게이트웨이로 일원화

-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의 기능에 대한 조정역할 수행 위해, 직접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한 공공주도의 기능 강화
 - ❖ 지역아동센터,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CYS-net 등 지역사회 공공자원 및 전문 심리상담서비스의 지원, 법률지원 등 민간서비스 제공주체와의 연계·협력체계 마련의 트리거(trigger) 기능 포괄
- ✓ 원가정 분리 아동의 일시 및 긴급보호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 ✓ 입양 및 가정위탁, 그룹홈 또는 시설입소 과정 단계별 서비스 제공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대안양육 제도 간 기능 조정 기능 수행



Ⅳ. 학대위기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③. 분절적인 아동보호업무의 효율화, 체계화

● 위기아동 신고·의뢰 및 발굴·접수를 위한 통합 Gateway 설치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접근성 제고하고 지역단위 아동보호서비스의 일관된 개시와 관리 현실화

- ✓ 아동보호 프로세스의 연속성 지속성 확보와 표준화된 사정도구 (assessment tool)의 매뉴얼화
- ✓ 위기아동의 발굴과 함께 대상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일련의 보호 및 서비스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공유, 모니터링
- ✓ 이를 위해 아동보호통합정보관리시스템(위기아동 DB)의 구축·운영으로 정보공유 프로세스 개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하는 방안 고려

- ❖ 피해아동의 보호 전 과정(수사 재판과정을 포함)에서 아동의 2차적 피해 예방 방안강구
- ❖ 학대 피해(의심) 아동 및 형제자매의 미디어에 의한 2차 피해 발생예방 위한 보호규정 마련 시급

Ⅳ. 학대위기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④ 4. 아동보호서비스 전담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 시군구 본청의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요원을 확충·강화하는 방안 우선 고려
 - ✓ 추후 읍면동 일선창구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아동보호 관련 업무 (신청접수, 초기 상담 등) 및 본청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업무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일부 민간위탁 기관의 위기아동 신고접수·상담 기능을 통합 Gateway로 단계적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 이에 따른 인력 업무 및 인력 등의 조정 필요
 - ✓ 기존 위탁기관으로부터 고용승계를 포함한 인력의 전문성 확보
- 아동보호업무의 전문성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을 엄격하게 제한



감사합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 ●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워크숍

발표 2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뉴스프레이밍 분석: 방송뉴스를 중심으로

ㅣ 정 의 철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뉴스프레이밍 분석 : 방송뉴스를 중심으로

정의철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부교수)

범죄 보도 생각해 봅시다

- 미디어는 범죄에 관한 도덕적 잣대를 통해 범죄의 원인과 결과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 범죄를 개인적인 도덕적 취약함의 결과로 묘사. 뉴스를 통해 개인에게 비난을 가함(Hallstone, 2000)
- 피의사실 예단, 피해자/피의자 인권 침해, 수사에 도움 보다는 관련 없는 사생활 등 무조건적인 폭로에 치중. 진실추구보다는 시청률에 집착하는 미디어의 시청율지상주의(rating mindset, Bourdieu, 1998) 관행이 작동
- 언론의 자유 = 언론인이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인가? 언론사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인 표현도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가?
- 국민의 알 권리 = 호기심 충족?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권리?
- 언론의 자유 vs. 효율적 수사의 요구
- 고정관념 확산: 이혼/재혼 가정=아동학대?

범죄보도의 중요성

-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신문과 방송, 종편, 케이블, **SNS**,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환경이 변화하고, 범죄보도의 양과 범죄보도가 도달하는 채널이 급증하고 있음
- 공중은 미디어를 통해 범죄를 인식하고, 태도를 형성하며(유우현·정용국·정지희, **2016**), 범죄에 관한 정보를 전적으로 미디어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미디어가 범죄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큼(노성호, **1997**)
- 미디어를 통해 범죄에 더 노출될수록 범죄현실에 대해 더 큰 두려움과 공포심을 보이며, 범죄현실을 과대 추정 함. 문화계발효과이론에 따르면, 텔레비전이 실제보다 더 많은 범죄와 폭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이 볼 수록 세상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짐(유우현 외, **2016**)

아동범죄 보도와 언론의 역할

- 방송은 아동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음주나 정신병력 등 비정상적인 면을 강조. 사건중심의 즉각적, 단편적인 묘사로 인해 사건의 맥락이나 사회적 해결책 논의가 배제 됨(홍숙영, **2011**)
- **2010**년 김길태 사건에 대한 보도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심층보도 없이 김길태 개인에 초점이 맞춰졌고,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지나치게 부각했음(권인숙·이화연, **2011**)
- **2008**년 나영이사건, **2010**년 부산여중생납치살해사건보도에서는 감시와 처벌강화 프레임이 지배적으로 등장. 범죄자신상공개, 전자발찌법 개정 같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감시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조가 지배적. 성의식을 바꾸는 등 아동대상의 성범죄원인에 대한 심층논의는 거의 없었음. 성폭력이 사이코패스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함(양정혜, **2010**)
- 아동보호정책/제도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마련되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신고 후 ‘대응’ 체계에 초점을 둠(김은정, **2016**). 향후, 언론이 ‘선제적으로(**proactive**)’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 법체계 수립, 아동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반대하는 사회적 메시지와 담론 확산에 나서야 함

2016년 1월 ‘장기결석아동 변사 사건 보도 분석(김회승, 한겨레신문 사회부 데스크)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취재경쟁, 경마저널리즘, 선정적 보도로 인해 구체적인 학대수법과 살해, 시체유기과정이 실시간 반복보도됨: 사건을 과장하거나, 오보를 낳고, 모방범죄나 2차 피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과잉인식시키도록 함
- 범행 이외 행적을 폭로해 피의자를 괴물로 만드는 경향: “사망한 최군의 부모가 아들의 주검을 훼손하기 전에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내용을 단독기사로 사회면 톱에 배치. 범죄와 관련없는 ‘최군의 어머니가 여동생을 꿈쩍이 아꼈다’, ‘최군이 입학한 뒤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됐다’, ‘최군의 아버지가 평소 인터넷 게임을 즐겼다’는 식의 관련 없는 보도를 쏟아 냄(김회승, 2016)
-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는 속보/특종 경쟁: 경찰의 보도자료 배포 후 경찰서로 몰려가고,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숨진 아동 부모의 인터넷 흔적을 뒤지고, 주변 이웃과 아동이 다녔던 학교관계자를 만나 파악한 조각사실들이 나올 때마다 ‘단독’이란 간판으로 뉴스를 내 보냄.

미디어의 상징권력 이해하기

- 미디어의 의제설정과 프레임: 미디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수많은 사건과 이슈에 대한 선택과 배제, 전면배치와 후면배치를 통해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음(Entman, 1991). 미디어의 현실 재구성 기능
- 미디어는 범죄에 대한 선택과 강조를 통해 가치와 방향성 부여. 공중은 범죄를 직접 목격하기 보다는 신문, TV,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인식과 태도를 형성. 이는 처벌이나 양형에 대한 여론으로 이어지고, 형사사법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줌(박지원·박상조, 2013)
- ‘헤진이 예술이 사건’, ‘나영이 사건’, ‘부산 여중생 납치살인 사건’ 등에 대한 보도는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사형제 부활 등의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음(양정혜, 2010)
- 미국주류신문은 범죄에 대해 개인에게 도덕적 낙인을 부여하고, 사회제도 보다는 개인을 비도덕적, 비이성적 일탈자로 프레임 하는 관행을 유지(Hallstone, 2000)
- 범죄나 일탈에 대해 법집행기관의 주장에 의존하며, 개인에 대한 ‘처벌중심접근’을 유지 함

범죄보도 왜 중요한가?

-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고, 범죄에 대한 대처와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시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극적인 요소, 범인을 추격하는 서스펜스, 범인이 잡혔을 때의 안도감과 사회질서에 대한 재확인을 통해 재미와 교훈 제공. 일탈과 정상에 대한 의미 규정,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누가 위험한지, 범죄해결과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상징환경 조성(양정혜, 2010)
- 범죄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 등 보통사람이 영향을 받음.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이차피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 수사편의를 위해 엠바고를 허용해야 하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수사상황을 보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음(김옥조, 2004).

범죄보도의 문제점-1

- 공중은 범죄보도의 홍수속에 실제 범죄 건수보다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며,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게 됨(박지원·박상조, 2013)
- 범죄보도의 문제: 발표저널리즘, 공식적 정보원에 대한 의존, 받아쓰기 저널리즘의 관행, 사생활공개, 수사상황 과잉노출, 자극적, 선정적 보도, 보충취재의 노력 없이 취재를 한 것처럼 보도하는 비윤리성
- 언론사 간 경쟁과 출입처/취재원 공유를 통한 카르텔: 언론사 간 속보·특종 경쟁과 흥미에 치중. 유사한 범죄 뉴스 양산, 반복, 선정적 보도, 오보, 인권침해, 수사방해로 이어질 수 있음(노성호, 1997)
- 범죄뉴스에는 수사기관, 정신과 전문의, 정치인의 목소리만 등장하며, 피해자나 일반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됨(양정혜, 2001)

범죄보도의 문제점-2

- 피해자나 피의자 가족/친인척 등의 개인신상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이승선, 김연식, 2009)
- 수사단계의 혐의사실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와 같은 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큼(김경호, 2004)
- 범죄보도로인해 수사진행이나 계획이 노출되면서 범인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표면적 현상과 흥미, 개인책임에 초점을 둠: 범죄결과나 행위에 초점을 두고,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맥락을 배제하며, 과잉처벌 분위기 조성과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커짐(이진국, 2004)

해외 사례

- 일본, 미국, 독일의 언론은 범죄보도 시 다양한 취재원과 피의자의 반응을 소개. 취재원 명시 원칙을 지키며(김옥조, 2004), 피의사실을 단정하지 않고, 경찰과 용의자의 입장을 모두 제시 함
- 미국언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며, 피의자를 범인으로 예단하지 않음. 범인 검거 또는 범인은 누구였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경찰은 누구를 무슨 혐의로 체포’라고 표현 함. 피의자의 전력이나 전과를 공개하지 않고, 취재원을 명시해 기사가 전해들은 전문임을 밝히는 관행 유지(김옥조, 2004)
- BBC의 ‘진전된 팩트가 없을 땐 가급적 재보도를 자제한다’는 내규: 반복보도하면 해당뉴스의 가치가 과잉될 수 있음을 반영한 가이드라인(김희승, 2016)

아동관련 범죄보도 가이드라인

- 방송심의규정 제6절 ‘어린이·청소년보호’에 방송이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유익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보도방향 언급은 없음.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의 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에는 언론이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해 보도해야 하며, 범죄 재연 시 아동출연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공개하지 않을 것을 명시 함
-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35조 2절: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 언론사의 보도준칙이나 기자협회의 언론보도윤리강령은 범죄보도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선정성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실만 다루며 피해자 인권을 존중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지만 보도경쟁이 시작되면 이런 준칙은 무시 됨(김회승, 2016)

연구문제

- 뉴스에서 ‘주제적 프레임’을 통해 마리아나 재배자들을 균형 있게 묘사하지만, ‘일화적 프레임’은 이들을 부정적이고, 비도덕적으로 규정함(Hallstone, 2000)
- 범죄뉴스가 아동학대사건의 현상과 흥미, 개인에 집중하는지(일화적 프레임), 또는 사건의 맥락과 환경,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지(주제적 프레임)를 분석 함. 어떤 정보원을 통해 뉴스 스토리를 구성하는지도 분석 함
- 이 연구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원영군 학대사건에 대한 뉴스의 프레이밍을 분석했음.
- 연구문제 1: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원영군 학대사건 뉴스에서 등장하는 핵심 정보원과 주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원영군 학대사건 뉴스의 특징과 채널 간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연구방법

- 분석대상: **KBS1,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의 저녁 메인 뉴스 69개를 확보해 분석 함
- 자료수집: 방송사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 이용해 수집
- 검색기간: 원영군 사건이 처음 뉴스에 등장한 **3월8일** 부터 **3월** 말까지의 뉴스를 전수 수집함
- 분석방법: 양적분석을 통해 방송사 별 뉴스의 수와 양, 시기를 분석해 어떤 시점에서 뉴스가 집중되었는지를 살펴 보았음. 이어서, 뉴스에서 어떤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는지를 연구자가 직접 반복 시청하고, 분석하는 질적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의미구성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음. 질적분석에서는 언어적 표현 뿐 아니라 영상을 통한 비언어적 표현도 분석했음.

연구결과

	채널명	프로그램명	최초보도	최종보도	보도 건수	보도 분량
1	KBS1	뉴스9	3월 8일	3월 17일	8	14분31초
2	MBC	뉴스데스크	3월 8일	3월 27일	12	19분40초
3	SBS	SBS8뉴스	3월 8일	3월 27일	13	21분41초
4	JTBC	JTBC뉴스룸	3월 8일	3월 17일	10	20분51초
5	TV조선	뉴스쇼8판	3월 8일	3월 20일	18	31분32초
6	채널A	채널A종합뉴스	3월 9일	3월 15일	8	13분11초

연구결과

- 각 방송사의 최초 보도는 **3월8일(채널 A만 3월9일)**이었고, 마지막 보도는 **3월27일(MBC, SBS)** 이었음
- 보도 건수는 **KBS1과 채널A의 8건** 부터 **TV조선 18건** 까지로 분포됨
- 한 뉴스 당 시간은 **1분** 대가 **65개**였고, **4개만 2분** 이상을 차지 함. 이는 분석과 주제적 프레임의 뉴스 보다는 현상묘사의 일화적 프레임의 뉴스가 많음을 암시함
- 보도건수와 양에 있어서 **TV조선이 채널A와 KBS1에 비해 2배나 더 많이 보도** 하였음

연구결과

- 일화적 프레임 중심: **69개** 뉴스 중 **65개**가 **2분** 미만의 뉴스 였음. 범행수법이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묘사에 치중 함
- 공식적 정보원 중심: 경찰이 가장 핵심적 정보원이었고, 그 다음은 피의자와 전문가의 순으로 등장
- 인권에 둔감한 보도: 원영이의 생전 모습의 사진, 학대모습을 묘사한 삽화, 멍든 장면의 사진, 상담일지 등을 공개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에 둔감함을 보여주었음
- 선정적 묘사: 락스, 찬물, 구타, 욕실, 알몸 등의 용어와 범죄수법을 삽화나 사진과 함께 지나치게 상세하고 선정적으로 전달해 범죄예방보다는 모방범죄나 2차피해의 우려를 낳게 함
- **KBS 1 3월12일**에는 경찰의 시신 수습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고, 연이은 보도에서는 욕실에서 상의를 벗은 원영군에게 찬물을 뿌리는 삽화를 보여줌. 채널 **A 3월11일** “[단독]게모 “전처 아이 키우기 싫었다” 에서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점들을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과대포장하고, 드론 수색장면과 멍든 사진, 지역아동센터 상담자료, 원영군의 생전 모습을 보여줌

연구결과

- 감정적 표현 남발: ‘뻔뻔한’, ‘인면수심’, ‘악마계모’, ‘끼니를 꼬박꼬박 먹는다’ 등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됨.
- 고정관념 확산과 사생활 폭로: **MBC**와 **SBS**는 3월27일 “법원의 이혼 전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다루었는데, 재혼/이혼가정 = 아동학대라는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줄 수 있음. “계모 김씨..”등의 표현을 반복해 계모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 확산. 계모가 노래방도우미였다는 불필요한 사생활의 폭로. **TV조선**의 3월12일 “고문 같았던 학대 ‘...계모, 욕실 감금에 락스 붓고, 굶겨’”와 3월15일 “원영이 굶긴 ‘악마 계모’, 게임엔 수천만원 쏟아 부어”는 계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 함. **MBC**는 3월 13일 제목부터 “평택 ‘신원영 군 계모’ 김 씨, 게임에 빠져 생활”로 ‘계모’를 강조
- 불필요한 장면의 반복: 장례식에서 오열, 드론, 피의자 압송장면 등. **MBC, SBS, 채널A, 조선TV**는 3월 13일 장례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유족의 오열하는 모습(**MBC, 채널 A**), 화장되기 직전 상황(**조선TV**)까지 불필요하게 자세히 묘사했음

연구결과

- 피의자에 대한 취재경쟁: 피의자의 짧은 대답을 듣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속보 경쟁. 피의자를 감정적으로 비난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주는 이중적인 보도태도를 보임
- 경찰의 살인죄 적용 검토를 너무 자주 언급하는 등 결과를 예단하려는 보도태도: 수사상황 노출로 피의자에게 이용될 수 있으며, 경찰의 법 적용은 검찰수사나 재판에서 얼마든지 바뀔다는 점에서 반복된 강조는 불필요함
- 공통적으로 검찰 송치 후 관련 기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음: 검찰수사 과정에 대한 후속취재를 통한 정보제공이 필요 함. 실제 이 뉴스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5개월이 지난 8월 초 1심 재판결과가 나왔을 때 임

연구결과: 방송사 별 특징

- **JTBC**는 처음에 계모라는 표현대신 의붓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일관성이 없음. 적절한 ‘호명’을 통해 선량한 재혼가정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예방해야 함
- 지상파가 피해아동 지원/사회안전망 강화에 더 주목함: **KBS 3월12일** ““신 군 누나는 어쩌나?” 학대 가정의 남은 자녀도 피해자”에서는 아동상담센터의 인력/권한 부족, 부모반발을 소개. 미국은 공권력 투입이 용이하다는 점 지적. 주제적 프레임으로 분석과 대안 제시를 했지만, 더 자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SBS 3월13일자** “3년 전 학대 알고도 ‘사회 안전망’ 없어 못 구했다”는 사회안전망 미작동과 경찰/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제적 프레임이지만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조선TV 3월20일**은 평택시가 장례비를 지원하고, 원영군 누나에게 생활비(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점을 다루지만, 추모분위기와 함께 간략히 언급함. **JTBC**는 이러한 주제 보다는 **3월20일** “[팩트체크] 원영이 부모 얼굴 비공개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통해 얼굴공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서 다른 접근법을 보여줌
- **TV조선**은 첫 보도부터 경찰의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음을 지적했다

질적 프레임 분석

- 질적프레이밍 분석을 통해 다섯 개의 내용적 프레임(주제)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선정적 묘사 프레임: 피의자 압송과 인터뷰, 학대/살해/유기 상세히 묘사 및 관련 사진/삽화 제시, 사생활 등 신상공개
- 처벌강화 프레임: 형량(공권력개입)강화 = 문제해결이라는 인식 조성
- 고정관념화 프레임: 계모나 이혼/재혼 가정=아동학대로 몰아가는 경향
- 악마화 프레임: 뻔뻔함, 인면 수심, 악마 등의 용어를 사용해 피의자의 반사회성, 비윤리성을 반복해 부각하는 경향
- 대안제시 프레임: 아동보호체계 보완, 공권력의 적극적 역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해외사례, 정책대안을 제시한 경우

결론과 대안

- 언론의 거대화/상업화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함. 기자라는 엘리트 집단이 뉴스생산을, ‘미디어 자본가’가 언론의 자유를 독점하면서(이병남, 2014). 국민의 알권리나 진실추구보다는 ‘시청률 지상주의’를 통한 이윤확대가 범죄보도 등 뉴스의 의제선택/프레이밍의 기준이 됨
- 전문직으로의 언론인 교육이나 평가시스템이 부실하며, 언론이라는 장은 공정보도의 전통과 축적된 객관적 저널리즘 문화도 부재한 실정임
- 외부의 어떠한 개입으로부터도 언론만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은 수동적/엘리트적인 언론 자유 개념이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특권’을 주장하는 것임. 언론이 ‘사회의 공기(公器)’ 역할을 하도록 시민사회의 감시와 개입이 필요함(정수영, 2015)

결론과 대안

- 인권을 위한 보도: 국민의 알권리는 호기심 충족과 다름. 헌법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맞서는 메시지와 담론을 확산하는 보도
- 피해아동복지 차원의 보도: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부모가 구속되면 남아 있는 자녀의 생계 문제가 절실함.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 문제를 다루는 보도가 필요함. 주목을 끌 만한 선정적 내용이나 장면이 없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복지문제를 더 다루어야 함.
- 속보/특종 경쟁에서 탈피: 범죄와 관련 없는 피해자나 그 가족, 그리고 피의자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 금지
- 다양한 전문가의 활용: 정보원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센터 관계자, 범죄심리 교수나 정신과 의사 등이 주로 등장. 전문적인 아동보호기관과 아동복지나 가족학 관계자들이 더 자주 정보원으로 등장해 사회적 맥락과 대안 중심의 논의가 필요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론장 제공: 정보원과 짧은 전화연결이 많아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함. 차분히 이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함

결론과 대안

- 후속보도 통한 환경감시 기능 강화: 2016년 8월10일 1심 판결이 있기까지 후속보도가 거의 없었음. 평소 아동학대 사건 예방을 위한 보도,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보도가 필요 함
- 범죄보도 자율규제 강화: 범죄보도 옴부즈맨/모니터링 프로그램, 언론사 간 상호비평, 언론학계나 시민단체의 전문적인 모니터링/비평과 그 내용의 공개를 강화해야 함
- 범죄보도 전문기자 육성과 언론인 교육: 범죄보도는 피해자와 국민전체의 인권과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기자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언론인 교육이 요구됨
- 반인권적인 범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학계가 비판하고,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언론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언론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론의 장을 위에 언론에 위임된 권리이며, 언론인(사)가 마음대로 쓰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함
- 언론/수사기관/언론학계의 협력체계 강화: 범죄보도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교육/연수/평가 프로그램의 도입

Thanks for your attention!!

정의철, 鄭義徹, Charles Jung

**(Division of Media & Advertising, Sangji University,
Korea)**

Ph. D. in Communication from Rutgers Univ. , NJ, USA

clerk88@hotmail.com/010-4478-4552

- ● ● ●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워크숍

발표 3

바람직한 아동학대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이 창 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바람직한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기존 보도준칙 소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from Noun Project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9월 시행)

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2EF1AA6565084E19B037331E780614DF0JK

NB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권리헌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받고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 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 ① 아동은 생명을 존중 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④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⑦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⑧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⑨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6. 5. 2). 아동권리헌장 리플렛.

NB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제13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 ②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 ③ (유괴 보도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 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kpec.or.kr/>)
NB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①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
- ②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③ (미성년 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자료를 밝혀서는 안 된다.
- ④ (자살 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 ⑤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 기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kpec.or.kr/>)
NB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방송심의규정 제6절 어린이·청소년보호

•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수용 수준)

- ①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 ②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NB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방송심의규정 제6절 어린이·청소년보호

• 제45조(출연)

-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출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임회 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⑥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4),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Law_List.php?ko_board=info_Law&str1=&search_stx=&page=2

NB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 아동권리보호를 위하여 미디어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원칙 -

내용

①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존중

- 미디어 활동의 전 과정에서 모든 아동과 보호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미디어 관계자의 사명과 책무 준수

-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과 관련한 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미디어 활동이 아동의 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이 당면한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맥락까지 파악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③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 존중

- 촬영 전에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전 동의는 아동 및 보호자가 촬영자나 다른 누군가에게 간섭이나 유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며, 촬영자는 이들에게 자신의 신분 및 촬영의 목적과 활용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은 촬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④ 아동의 사생활 보호

- 아동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보유합니다. 미디어 관계자는 촬영 과정과 보도 이후까지 아동의 신변 보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⑤ 적절한 촬영 환경 보장

-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촬영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촬영 관계자와 촬영의 대상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NKC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 아동권리보호를 위하여 미디어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원칙 -

내용

⑥ 촬영으로 인한 사후 피해 예방

- 보도 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도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파급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 대상 아동의 상황에 대해 보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⑦ 사실에 기반을 둔 촬영

-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이 당면한 상황과 아동의 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동의 정보와 촬영 결과물을 특정한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⑧ 아동 및 보호자의 능동적 묘사

-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과 보호자를 무기력한 수혜자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 주체로 묘사해야 합니다.

⑨ 현지 지역 문화의 존중

-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이 속한 현지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현지 문화의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비취질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⑩ 국내외 협력기관 및 직원 존중

- 한국의 협력 기관과 촬영 국가 내 동행하는 현지 기관 직원 등 미디어 활동의 협력 파트너를 존중해야 합니다.

출처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14),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미디어가이드라인, 4-5쪽.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홈페이지(www.ngokcoc.or.kr/)

NKC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기자협회 '성폭력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①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 언론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 보고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일부 개인의 정신적 병리현상이나 절제할 수 없는 성 욕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 인식과 양성불평등문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낮은 사람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아는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이 여성의 순결을 훼손한 일, 치유되거나 극복될 수 없는 피해라는 사회적 편견에 기초한 보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범죄에 빌미를 제공 하였다고 인식될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보호 우선하기

- 언론은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 언론은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보도 내용 중 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 관계, 주거 지역 등 주변정보들의 조합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
- 언론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언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NZ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기자협회 '성폭력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내용

③ 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

- 언론은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언론은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④ 신중하게 보도하기

- 언론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언론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지 판단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해결에도 관심 가지기

- 언론은 피해자 보호 제도나 관련 법률 정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소개 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범죄나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성폭력 범죄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확산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도 주목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의 발생 초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의 회복이나 치유 과정, 제도의 개선 노력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http://www.journalist.or.kr/>)

NZ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UNICEF 아동취재가이드라인
내용
① 원칙 - 모든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존중 받아야 한다. - 아동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동이나 그들의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야기나 이미지를 출판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인터뷰 가이드라인 -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아동의 아픔이나 슬픔이 재발하도록 하는 어떠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서는 안된다. - 방송 인터뷰시 아동의 집이나 커뮤니티, 일반적 거처 등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아동보도 가이드라인 - 아동이 성적 폭력피해자, 물리적, 성적 학대가해자, 범죄혐의자, HIV 양성자인 경우 항상 아동의 신상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 아동의 신원이 공개되더라도 아동의 어떤 위해(harm)나 낙인(stigmatization), 보복(reprisals)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출처: UNICEF(2016). Reporting guidelines. http://www.unicef.org/media/media_tools_guidelines.html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아동학대사건보도 가이드라인 제시



1. 피해자 및 가해자 신원

① 피해아동 및 가족의 신원공개 금지

- 언론은 피해아동의 신상노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아동의 신상노출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제한
-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 금지

※ 관련 법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피해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 아동 생전의 사진, 편지, 상담내용, 소지품, 학교생활기록부 등).
- 언론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물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가해자 신원공개 금지

- 언론은 가급적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원이 공개되면 피해아동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취재과정

①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 금지

- 언론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터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피해상황을 알고 싶으면 상담사 등 제3자를 통해 취재를 해야 한다(사례: 생존피해아동이 다니는 학교나 주거지 등에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강제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경우).

※ 관련근거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보호

- ①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학교장이나 유치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접촉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 언론은 피해자의 가족 및 관계기관 등이 취재를 거부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피해아동의 친구들에 대한 인터뷰 및 보도 자제

- 언론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친구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친구들에 대한 인터뷰를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예: 피해아동이 다니는 학교나 기관을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피해아동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③ 신고자의 신분 보호

- 언론은 학대행위 신고자의 신변을 노출시키는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가 전근을 간 학교를 찾아내어 인터뷰를 시도)

※ 관련 법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보도내용

① 학대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의 제한

-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가급적 학대방법에 대해 상세한 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범죄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학대방법에 대해 전달할 수 있으나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언론은 학대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집중적으로 노출하거나 학대장면의 재연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된다.

※ 관련 근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보호

-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②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의 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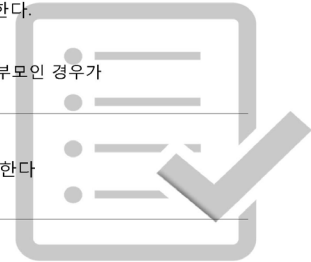
-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할 때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 계모의 아동학대살인 등 '계모' 부각).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3.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③ 피해자위주의 아동학대사건 지칭 금지

-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지칭할 때 피해자 위주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 11살 인천 아동학대사건, 울산입양아동학대사건).



NK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이가 최초 발견된 후 부모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 언론이 아이에게 상처 부위까지 옷을 올리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갔어요.”

“취재진은 당시 6학년이었던 큰 아이 학교로 찾아가서 ‘엄마는 PC방에 있었니?
그 시간에 아빠는 뭘 했니?’ 등 질문을 던지고 괴롭혔죠. 심지어 위성사진으로
저희 집 위치를 낱알이 온 세상에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죠.
남편은 언론은 하이에나다. 고종석보다 더 나쁜 건 언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나주사건 피해자 아동 어머니의 인터뷰 중

출처 : <http://kizmom.hankyung.com/>

NK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언론이 대중의 ‘알 권리’를 명분 삼아 피해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인들 스스로 ‘기자윤리강령’이나 ‘인권보도준칙’,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등을 마련했음에도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 PD저널 최영주기자 (2014.04.16)
출처 : <http://pdjournal.com/>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Media outlets need to develop valid, respectful, and specific procedures for covering children.

Journalism schools need to educate students in a systematic way about the ethical implications of interviewing and covering children so that in the future, practicing journalists are better prepared.

- Smith Fullerton, R. (2004).
Covering kids: are journalists guilty of exploiting children?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 ●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워크숍

종 합 토 론

- Ⅰ 토론 1 : 이 용 욱 (경찰청 여성계장 경정)
- Ⅰ 토론 2 : 윤 여 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 Ⅰ 토론 3 : 신 수 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지원팀 변호사)
- Ⅰ 토론 4 : 이 완 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Ⅰ 토론 5 : 유 상 건 (상명대 문화기술대학원 스포츠정보기술융합학과 교수)

경찰의 아동학대 사건보도 가이드라인

Ⅰ 이 용 육

(경찰청 여성계장 경정)



I 토론문

경찰의 아동학대 사건보도 가이드라인

이 용 욱 (경찰청 여성계장 경정)

I. 서론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가부, 교육부 등 유관부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아동학대처벌법」¹⁾과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²⁾ 등을 토대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현장 수사경찰관들도 同 지침을 바탕으로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

II. 경찰의 아동학대 사건보도 원칙²⁾

1. 수사사건 공개 요건

공판청구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① 재발방지, ② 오보·추측성 보도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③ 신속한 범인 검거, ④ 그 밖의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공판청구 전이라도 예외적 공개사항의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³⁾

○ 수사사건 공개 요건

- 공판청구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원칙적으로 공개 금지
- ※ 헌법 제27조 제4항, 형소법 제275조의2(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언론공개의 기준) 제1, 2항

1)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2)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제4장 '언론에 의한 2차 피해(2014.9),

3)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예외적인 공개)

- ☞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 처분을 한 사건은 공판청구 전의 수사사건으로 간주
- 공익 및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경우, 공판청구 전이라도 예외적 공개사항의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의 공개 가능

2. 권한 있는 간부로 대(對) 언론창구 일원화

사건 브리핑의 경우 수사 책임기관인 지방청 또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언론사들의 개별 취재 요청에 대해 수사부서의 장을 공보책임자로 지정하여⁴⁾ 언론창구를 단일화 하고 있다.

언론 공개 때에는 혐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의 추측, 책임 회피 목적의 발언 등 주관적 평가가 언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수사사건 공개 범위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인해 피해아동은 물론 피해아동의 가족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또한, 언론공개로 인해 모방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사항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 수사사건 공개 범위

-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히 공개, 이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 수사진행과정이 자세히 공표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언론의 추측성보도가 겹쳐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우려
- 혐의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의 추측, 책임 회피 목적의 발언 등 주관적 평가가 언급되지 않도록 유의
 - ※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 및 언론 인터뷰 협조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을 발표하고,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례(‘04. 5. 11. 서울고법)
- 언론홍보시 공개됨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 모방범죄 발생,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개 금지

4)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공보책임자의 지정) ①경찰관서의 장은 정확하고 일관된 수사사건의 공보를 위하여, 수사부서의 장을 공보책임자로 지정하여 수사사건 등의 공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4. 수사보안 유지

아동이나 여성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등은 추가 피해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 친분, 제보 등을 활용한 기자 등 언론 관계자와 비공식 라인을 통한 개별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 수사보안 유지

- 아동·여성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등은 추가 피해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철저
- 개인적 친분, 제보 등을 활용한 기자 등 언론관계자와 비공식 라인을 통한 개별적 접촉은 금지
- 보도시 사회적 혼란 우려 및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 등은 언론에 보도보류(Embargo) 요청
- 사건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출입인원 외에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수사서류 등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서랍함 등에 보관

5. 기타 법률 등에 의한 유의사항

가.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공보제한사항)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등에 대해 일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5)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의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

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아동학대 사건 신고자는 「특정범죄 신고자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보호받고 있어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을 추측할 말한 정보는 일체 공개하거나 보도하여서는 안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된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분노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신고자 관련 정보는 일체 언론에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사건 신고자는 「특정범죄 신고자보호법」의 가명조서⁶⁾나 신변안전조치⁷⁾,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사건보도 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III. 보도 가이드라인 관련 제언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주체로서, 언론과의 관계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학대나 성학대 등과 같이 민감한 사건이나 피해자의 2차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 있어서는 가급적 보도를 자제하는 등 특별히 언론 대응에 주의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대국민 경각심 고취, 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 등의 목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과 언론이 모두 공감하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가이드 라인’ 마련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금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초안으로 작성한 ‘보도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기존 자료들과 과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발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사건관계자 및 신고자 신원 보호,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인터뷰 금지, 학대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 등 자극적인 보도 제한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가이드 라인’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의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도 ‘보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공동수행지침’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과 실천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언론에서도 ‘보도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피해아동이나 가족, 신고자 등이 2차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사건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보도 가이드라인’이 아동 인권보호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도약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6)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7) 「특정범죄 신고자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흥미’ 대상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 보도

이 윤 여 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I 토론문

‘흥미’ 대상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 보도

윤 여 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랫동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족의 책임 아래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인간기본권 보장에 대한 주장이 등장한 18세기부터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1960년대까지 대다수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 논의는 교육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였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아니었다. 1960년대 교육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논의로 단순히 교육권과 양육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어린이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권보장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CRC)은 만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생존과 발달, 참여와 보호 관련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어린이학대를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제1조에서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협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교육청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라북도에서 제정 및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언론의 보도과정에서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흥미성’에 초점을 맞춘 사건사고 보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19세기와 20세기 처럼 성인으로부터 수동적으로 훈육 받고, 양육 받을 대상으로만 비춰지기도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보도사례

(1)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서의 어린이와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언론보도준칙 제7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이러한 사건을 하나의 ‘흥밋거리’로 취급하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 자유학교(교장 김윤규)는 ‘새파란’ 패자(敗者)들이 모이는 곳이다. 중·고교 퇴학생, 자퇴생, 왕따, 학교 부적응자 등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한 ‘10대 문제아’들이 태반이다. 학교는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을 준비시킨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최소한 고교 졸업장은 따도록 돕는 것. 벌써 12년째다. 불과 수년 전만해도 ‘깡패 집합소’라고 불리던 이 학교에 이제는 ‘포항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OO일보 2012.8.12)”⁸⁾

이 기사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패자’, ‘깡패’, ‘10대 문제아’로 지칭되고 있다. 이는 훈육대상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반드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문제아라는 고정관념을 전파한다. 또한 이 기사에는 정규교육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교육체제를 선택하여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선입견도 담겨져 있다. 이 기사 속의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한’이라는 표현에는 대안학교 학생들을 잠재적인 교화 대상이라고 여기는 시선이 담겨져 있다. 기사 작성자는 ‘깡패’, ‘10대 문제아’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3자의 발언을 객관적으로 인용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10대 문제아’가 되고, 이러한 아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은 ‘깡패 집합소’라는 선입견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관련 보도 시 자료영상이나 그래픽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검거된 한 렌터카 절도 용의자 이 모(21세)가 10대 여성 2명을 끌고 다니며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얼굴을 흐리게 처리했지만 피해 청소년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도했다.⁹⁾

최근 청소년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증가하고, 이에 관한 사건 보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려질 경우 성년기의 사회

8) 포항 최초 대안학교 청소년 자유학교 … 퇴학·왕따 청소년에 야학봉사 12년, 국민일보 2012년 8월 12일자 기사

9) 렌터카 절도범, 잡고 보니 10대女 끌고 다니며 성매매 알선, MBC 뉴스투데이 2015년12월 25일 방송

활동과 원만한 인격형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소년범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해 본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단순히 흥미유발을 위해 청소년들에 의한 성범죄를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 가해자의 실명을 밝힐 경우에 피해자는 익명으로 보도하더라도 가해자의 실명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

일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에 대한 보도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 시사주간지의 기자는 “어린이와 여성은 존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거나, 선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며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시도하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나 청소년 보도는 교육이나 입시 문제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보도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신문 문○○ 기자).

2016년 2월 3일 부천에서 발견된 한 여중생 사건과 관련된 신문 및 방송 보도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었다.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 모(2012년 사망 당시 13세)양이 아버지와 계모에게 심한 매를 맞고 결국 숨진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언론은 이 양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이 가족의 신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피의자가 부천시내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모 신학대학교 겸임교수라는 사실과 그의 실명, 가족의 실명을 모두 찾아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보도는 TV의 경우에 더 자극적으로 나타났다. 한 TV뉴스 보도는 피해자인 이 모 양의 주검이 경찰에 의해 들려나가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죽은 이 모 양의 인권 뿐만 아니라 남은 형제자매와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2)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도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매번 교육과 입시문제만 보도할 수도 없다. 이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로 가출청소년들에 대해 보도하며 대안 제시를 고민한 기사가 있다.

“가출 청소년 이수현(가명·16) 양이 강력범죄의 늪에 빠져들게 된 것은 ‘가출팸’을 만나면서부터였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와 마찰이 생길 때마다 집을 뛰쳐나와 ‘조건만남’으로 용돈

을 벌였고, 그러던 중 동갑내기 가출 청소년 이윤희(가명·16) 양의 눈에 띄게 됐다. 과거에도 성매매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남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던 윤희는 새로운 범죄를 위한 가출 팸을 조직 중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출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가출청소년들의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5년이 됐지만, 아직 달라진 것도, 보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출팸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가출팸을 해체·분리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찰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가출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A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가출팸을 단속하고 가출청소년들을 찾아 가정으로 돌려보내 봤자 가정에서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결국 아이들은 다시 가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출청소년들의 유일한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는 전국 116개소로, 최대 수용인원이 1200명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적인 가출청소년 추산 대비 0.3%로, 가출 청소년 1000명 가운데 3명만 청소년쉼터에 머물 수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단기 쉼터나 중장기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OO일보 2015년9월21일자)¹⁰⁾

이 기사에서 기자는 가출청소년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을 찾아서 보도하였다. 기자는 ‘가출팸’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의 범죄 행태를 서술하면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다시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제시했다. 또한 가출의 원인을 단순히 불안정한 가정환경에만 두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해야

어린이와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자 독립된 인격체로서 기본권을 갖고 있는 주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은 대부분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만 중요하게 여겨졌을 뿐,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왔던 것이 관례였다. 특히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흥미로운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10) ‘가출팸 17세 민호’ 줌도둑 → 性매매 → 강도 ... 조폭 → 다음은?. ○○일보 2015년 9월 21일자 기사

소재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보도관행에 대해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새로운 어린이와 청소년 보도 방식'을 권고하였다.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은 더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을 한정치산 자처럼 여기지 말고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금처럼 상업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더불어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도 인격권을 갖고 있는 주체로서 인식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였다. 부천 여중생 사건처럼 개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피해 당사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이들의 얼굴, 성명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동학대범죄보도에 대한 제언

■ 신 수 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지원팀 변호사)



I 토론문

아동학대범죄보도에 대한 제언

신 수 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지원팀 변호사)

아동학대범죄는 가해자의 80% 이상이 피해아동의 부모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밀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도는 곧 피해 아동 신상에 관한 보도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번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삭제·정정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앞서 인용한 통계처럼 그나마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호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이를 대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피해아동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회적인 죄책감은 피해 아동에 대한 과열된 취재로 변질하여 정작 피해아동의 복리는 고려되지 않은 선정적인 보도를 양산하고 있으며, 아동학대근절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자들의 정보가 영웅담으로 포장되어 보도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본인은 몇 가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변호사로서 활동하였으며¹⁾,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보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보도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취재 단계에서의 문제

가. 피해아동 및 주변인에 대한 과도한 취재

피해아동에 대한 과도한 취재 자체로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인격권 침해의

1) 토론문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본인이 조력하였던 아동학대사건으로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단순화하여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소지가 있으며, 피해아동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 되고 있는 실정이다.²⁾

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아동의 민감 정보를 가감 없이 수집

민감 정보 수집과정 자체에서 피해아동의 신상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수집된 정보들이 선정적인 보도에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³⁾⁴⁾

다. 신고자에 대한 취재

법률상 신고자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고 외부로 유출되면 아니 된다.⁵⁾ 위 법률의 취지는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결국 신고자의 정보를 통하여 피해아동의 정보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⁶⁾

라. 각종 기관과 단체들을 이용한 취재 시도

피해아동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재 및 외부인을 제한하고 경우가 있음에도 유관기관 및 단체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취재를 시도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시설의 업무와 피해아동 치료에 차질을 빚고,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⁷⁾

2) <사례 1> 일부 언론사는 피해아동의 학교, 주거지 등에서 상주하면서 인터뷰를 시도하였고, 피해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외관을 그대로 드러낸 사진, 영상 등을 방송하거나, 보호시설의 위치를 적시하여 보도한 사례

3) <사례 2> 피해아동의 신상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피해아동 상담내용, 일기장, 상담 중의 그림,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대한 무분별한 수집이 이루어진 사례

4) <사례 3> 피해아동 사망 이후 격망된 피해아동 유족들을 통하여 피해아동의 생전 사진 및 기타 피해 아동 사망 장소 사진 등을 가감 없이 수집한 사례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3항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사례 4> 피해아동을 신고한 동네 주민을 인터뷰를 영웅담으로 포장하여 인터뷰한 사례

7) <사례 5>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취재를 금지시키자, 홍보용으로 피해아동에 방문을 계획했던 기관과 단체를 언론이 역으로 이용하여 취재를 시도한 사례

2. 보도 단계에서의 문제

가. CCTV 영상의 보도

영상의 파급력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향후 피해아동이 성장하여 본인의 학대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CCTV영상이 있는 경우 언론사들은 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⁸⁾⁹⁾

나. 학대피해사실의 선정적 재연 보도

피해아동의 학대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보도는 피해아동의 사생활 및 인격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 오며 또한, 재연하는 아동들에게도 또 다른 정서학대의 문제를 제기될 수 있다.¹⁰⁾

다.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가 수집되어 자의적으로 해석 보도

피해아동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로서 언론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피해아동의 심리 상태, 가정 상황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하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¹¹⁾

3. 보도 이후 단계에서의 문제 - 삭제 및 정정 요청

피해아동의 사생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관련 보도의 삭제·정정 요청하고자 할 때, 피해아동을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언론에서는 공익을 내세워 해당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¹²⁾ 또한, 언론

8) <사례 6> 피해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 찍힌 CCTV가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추후 삭제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인터넷 상에 퍼진 영상을 모두 삭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례

9) <사례 7> 피해아동의 신고 직전 모습이 찍힌 CCTV를 언론사가 관련 보도 시 캡처한 화면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 사례

10) <사례 8> 피해아동의 구체적인 학대의 정황과 피해아동의 상흔 사진 등을 재연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한 사례

11) <사례 3> 피해아동 사망 이후 격앙된 피해아동 유족들을 통하여 피해아동의 생전 사진 및 기타 피해 아동 사망 장소 사진 등을 가감 없이 수집한 사례

12) <사례 9> 공판정에서 언급된 피해아동의 심리상태,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이를 확

이 이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SNS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퍼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¹³⁾

4. 결 - 아동학대사건 보도에 대한 제언

가. 경쟁적 취재를 지양하고 단일 사건에 대한 일회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피해아동이 입원치료 중이거나 관련 보호기관에서 보호 중인 경우와 같이 피해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한 보도 자료를 신뢰하고 다른 창구를 통한 경쟁적 취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이는 피해아동이 회복에 집중하여야 하는 시점에 언론 대응에 관련 자원들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보도는 피해아동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사건이 완료되었을 때 일회적 단신으로만 보도하도록 하며, 후속보도는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한다.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대한 대응이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보도가 곧 피해아동에 대한 보도가 되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영웅담식의 보도 역시 지양하도록 한다.

나. 아동학대근절목적의 보도는 기획 기사로 하되, 피해아동 관계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 보도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단일 사건이 아닌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사회적 인식의 변동 등을 추적하여 여론 환기용으로 작성되는 기사의 경우,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피해아동의 관계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며, 피해아동 관계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

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삭제 요청하였으나, 후속 보도와의 연계성 및 보도의 공익성을 들어 거부한 사례

13) <사례 6> 피해아동이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 찍힌 CCTV가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추후 삭제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인터넷 상에 퍼진 영상을 모두 삭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례

다. 피해아동의 복리와 인격권을 고려하여 취재 및 보도하여야 한다.

- ①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아동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는 높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생존한 피해아동의 경우, 본인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한 보도를 하여야 하는 바, 피해아동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지역, 학교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아동의 현재 상태를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③ 아동이 사망한 경우는 피해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 보도에 있어 부주의해 질 수 있는바, 인격권을 보다 예민하게 고려하여 보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피해아동 측이 제공한 자료라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복지·인격권에 비추어 부적절할 경우 이를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ex, 사망 아동의 사진 등)

라. 피해아동 측의 요청 시 신속한 관련 보도를 삭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피해아동 측이 요청할 경우 신속히 관련 보도를 삭제하도록 한다. 다만, 이의 실효적 활용을 위해 입법적으로 아래의 보도삭제청구권이 신설¹⁴⁾되어야 한다.

- 일괄삭제청구권 : 단일사건의 경우, 피해아동 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해당보도의 일괄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함(실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이 필요)
- 삭제청구권자의 확장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특히 사망한 아동의 경우), 언론보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사 등이 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설할 것을 제안

한국 언론은 아동학대 보도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ㅣ 이 완 수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Ⅰ 토론문

한국 언론은 아동학대 보도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완 수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모일간지 보도 사례〉

신원영(7·사망)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숨지기 직전까지 좁은 집안 화장실에 갇혀 지냈다. 잠도 화장실에서 자고, 가끔 주는 밥도 화장실에서 먹어야 했다. 팬티와 얇은 일상복 상의만 입었던 원영이는 나중에는 이마저도 얻어 입지 못했다.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는 생리현상 등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원영이에게 ‘뒤돌아’, ‘쳐다보지 마’라고 명령했다. 매질과 손찌검, 락스·냉수체벌 등 작은 체구(키 112.5cm·몸무게 15.3kg)인 원영이에게 가해진 가혹한 학대도 주로 이곳 화장실에서 이뤄졌다. 원영이에게 화장실은 ‘생지옥’이었다.

■ 생지옥 화장실

= 원영이는 지난해 11월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갇혔다. 앞서 2년여간 모진 매질과 손찌검이 가해진 후였다. 계모 김 씨는 하루 한 끼만 화장실에 밥을 밀어 넣었고 수시로 폭행을 가했다. 원영이는 자신보다 체구가 월등히 큰 계모의 손찌검에 맞아 넘어지면 서 번기에 이마를 부딪쳐 찢어지기도 했다.

화장실을 벗어나려다 욕실 청소용 솔로 수차례 맞기도 했다. 아버지 신 씨는 모른 체했다. 김 씨의 학대 강도는 더욱 세졌다.

올해 1월 28일 원영이 몸 위로 강력 살균제인 락스가 뿌려진 것이다. 흡인만으로 기관지에 손상을 주는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락스체벌’이 가해진 이유는 변기 옆에 오줌을 흘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였다.

이후 5일간 굶다시피 한 원영이는 지난 달 1일 팬티에 변을 묻혔다. 원영이의 맨몸 위로 찬물이 끼얹어졌다. 김 씨가 한겨울에 냉수를 퍼부은 것이다. 신 씨 부부는 생리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영이가 감금된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그때마다 원영이에게 쳐다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지난달 2일 원영이는 쓰늘한 시신(훗날 국과수 굶주림·다발성 피하출혈·저체온 등으로 사인 추정)으로 발견됐다. 생지옥 화장실은 주검으로 나왔지만 이불에 둘둘 말린 채 베란다에 방치됐다 지난 12일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됐다.

위의 기사는 한눈에 보더라도 범죄 상황이 지나치게 제세하게 기술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표현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 범죄과정을 너무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아이의 죽음 과정이 너무나 생생해 심정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하다. 어린 자식을 둔 어른 입장에서는 보면 아이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보도는 다른 범죄 보도와는 달리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라는 점에서 보도에 특별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언론은 아동학대 보도의 이런 특수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보도하는 경향을 너무 자주 보인다는 사실이다. 한국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범죄행위, 범죄과정, 범죄장소 등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이는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범죄 상황에 대한 표현이나 묘사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다. 아동교육과 정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셋째, 동영상,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각종의 영상 도구에 담긴 장면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범죄가 극단적이고, 사실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과정을 너무 사실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범죄행위의 폭력성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이다.

넷째, 피해 아동의 신상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름, 나이, 거주지, 학교, 성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피해 아동이 누구인지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이중의 고통과 함께 낙인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섯째,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실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범죄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 형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여섯째, 가해자에 대해 지나치게 무신경하고, 공격적이다. 가해자에 대한 성급한 단죄, 가해자의 신상 노출, 가해자 가족에 대한 연좌 등은 문제이다. 이는 가해자가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감정적 보도는 저널리즘 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아동학대 보도과정에 몇 가지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범죄행위, 범죄과정, 범죄장소 등 상황에 대한 기술을 최대한 순화시켜 보도해야 한다. 행위의 사실성, 과정의 구체성, 장소의 노출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범죄 상황에 대한 표현이나 묘사를 완곡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자들은 범죄보도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더 큰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보도과정에 늘 유지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영상자료를 그대로 내보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노출 수위를 최대한 낮춰, 이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 영상자료에 대한 철저한 게이트키퍼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정보 노출로 입을 수 있는 이중피해를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학대 보도는 해당 아동이나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을 보도과정에 늘 고려해야 한다. 물론 언론들이 최근 익명보도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매체들을 보면 원칙이 없고, 윤리의식이 희박한 범죄보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다섯째, 보도 자체를 자세하게 전달하는 〈일화적 프레임〉 대신에 문제 해결 주체와 해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제적 프레임〉을 제공하는 보도자세가 더 필요하다.

여섯째, 가해자에 대한 성급한 유죄 추정과 극단적 비난을 삼가는 절제되고, 냉정한 객관적 보도원칙을 지키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유 상 건

(상명대 문화기술대학원 스포츠정보기술융합학과 교수)



I 토론문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 상 건 (상명대 문화기술대학원 스포츠정보기술융합학과 교수)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병리현상이다. 일부 특수층 가정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극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며 그 대책은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고 실천은 집요하면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특히 온 국민의 관심을 바탕으로 근절 또는 최소한 상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책마련과 상황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 세미나에서는 이를 위해 정책과 보도 분석, 보도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진단과 대안이 제시됐다. 본 토론문에서는 아동학대 사건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다른 발표자의 내용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 있는 다섯 명의 교사들과 신원영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접한 상황에서 현직 교사들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나아가 ‘엄마라는 이름의 살인자’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은 “정신병적 징후일 수밖에 없다”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부모라면, 또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엄마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일정정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모성애(maternal affection)에 대한 통념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간호학 대사전은 모성애를 “생활력이 불충분하고 발달이 미약한 유아에 대해서 어머니가 가진 애정을 말한다. 특히 보호, 염려, 돌봄, 접근, 접촉, 생리적/심리적 욕구를 만족하는 행동 등에 의해서 표현된다 ... 모성애는 모성욕에 비해서 종족보존의 생물학적 의미와 함께 사회적 조건이나 의지적 작용도 포함되어,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모성애에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 사회적 조건이 관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성애는 모든 어머니의 DNA에 각인돼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생각한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2009)라는 영화가 있다. 시골 약재상에서 일하며 아들과 단 둘이 사는 엄마가 살인 혐의를 받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범인을 찾아 나선(증거 인멸에 나선) 엄마의 이야기다. 상영 당시 젊은 엄마들이 많이 가입한 온라인 토론방에서는 “모든 엄마가 저렇게 해야 한다면 나는 엄마라는 자격을 반납해야 할 것 같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식을 향해 ‘조건 없이 헌신하는’ 엄마상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많은 문학작품과 영화에서 표현된 엄마의 모습은 엄마 이데올로기를 양산해 왔다. 반복돼서 변주된 이데올로기에 엄마들과 우리 사회는 ‘엄마는 언제나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는 전제외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계모가 아닌 친모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아동학대사례가 있지 아니한가. ‘잠 안자고 밤 새우는 아기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리고 싶었다’는 젊은 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 엄마(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일부 정신이상자의 돌출된 행동이라 치부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다. 그보다는 엄마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올바르게 자녀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아동학대는 일부 엄마가 범한 범죄라 치부하기보다 그들의 생물학적, 사회적 한계를 인정하고 양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심리적, 경제적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방안을 가이드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취재와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취재 지시가 내려지고 이를 기자가 취재하고 기사가 작성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인권유린과 선정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원인이 파리를 틀고 있을 수 있다. 모든 언론사에서는 취재과정과 기사작성, 송고, 그리고 데스크 과정에서 많은 결정이 내려진다. 사건사고 보도를 담당하는 사회부 일선기자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된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기사의 전체적인 톤과 내용, 묘사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차장급 이상 부장선이다. 이들 대부분은 90년대 중후반 입사한 기자들이다. 치열한 보도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메인 미디어에서 근무하는 경우 입사 당시와 비교해 미디어 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을 몸으로 느낄 것이다. 늘 있어왔지만 언제나 부족한 취재인력과 열악해진 근무조건은 더욱 강도가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제작시스템이 악화되면서 신문의 경우 오타자가 눈에 띄는 빈도는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고 ‘아동학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문장이 메이저 신문에 버젓이 등장한다. 선정적인 보도의 유혹은 강력한 반면에 취

재 윤리와 보도 가이드라인은 희미하다. 이는 결국 언론의 신뢰를 갉아 먹는 길이며 생존 가능성을 축소하는 길이다. 속보성이 두드러지는 인터넷 시대에 언론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보도태도다. 보도를 책임지고 있는 90년대 입사자들의 냉철한 인식과 미디어 본연의 자세를 가다듬는 데서 문제점을 해결할 다양한 방안중의 한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